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및 법적권리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임신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 » 임신 13주~35주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 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는 월 최고 40만원** (사업주를 통한 간접지원)을 지원받습니다.

2 태아 검진시간 허용

- »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3 난임치료 휴가

-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여기서 잠깐!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사직을 강요받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복직 또는 부당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2 출산

1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휴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90*일** (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둥이는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

유산·사산휴가 | 유산·사산한 **근로자**는 **5~90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통상임금100%)하며, **무급 30일은 정부가 지원(최대 월 160만원)**

2 배우자 출산휴가

- »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3~5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 단,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함

3 수유시간 허용

-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빠넷

아빠맞춤형 육아정보*

통합제공

*정책정보(예-배우자출산휴가),
아빠심리지원(예-심리전문가가
해결해주는아빠의 고민),육아 휴직
선배들이말해주는 생생후기 등

홈페이지 | www.papanet4you.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panet4you



3 육아

1 육아휴직

휴직 | 만8세 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 이하의자녀가있는 **근로자**는**최대 1년**의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습니다.

급여 |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됨)

2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상한액 : 첫째 150만원, 둘째이상 200만원)

* '18년 7월부터는 모든 자녀에 대해 상한액 200만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근무 |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 혼합사용 가능

급여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는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육아기 단축급여 (정부지원) = 통상임금 **80%** × $\frac{\text{단축 전 근로시간} - \text{단축 후 근로시간}}{\text{단축 전 근로시간}}$
↳ 상한: 150만원

4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보호 및 차별금지

1 근로 전환

-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2 시간외 근로 제한

-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3 야간근로·휴일 근로 제한

- » 사용자는 임신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4 유해·위험업종 근무금지

- » 임신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 동일업무 복귀 등

-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에 종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6 불리한 처우·해고 등의 금지

- »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등 사용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근로자를 위한

사업주를 위한 »

2018
일은 워워
생활은 라라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근로자·사업주
지원제도**

문의 ☎ 국번없이 1350



자세한 내용은 포털·페이스북 검색창에 '일·생활 균형'을 검색하세요 !

일생활균형

일생활균형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한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2호)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1. **육아휴직 부여**
해당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월 30만원
·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해당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월 20만원, 대기업 월 10만원

2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1호)

» 출산육아기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임신,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생후 15개월 이내 자녀)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재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3호)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했으며, 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대체인력 1인당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4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사유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적합한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적시에 맞춤형인재를 추천**해드립니다.

신청 | www.대체인력뱅크.com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구인신청
문의 | **수도권** 민간 대체인력뱅크 1577-0221
지방권 민간 대체인력뱅크 1577-8505

5 직장어린이집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 2670-0411~25
부산 051) 320-8182~7
대전 042) 870-9111~6

6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1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임신, 육아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①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0~30시간으로 단축근로, ③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자·기계적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지원 내용 1.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 (보전확인 후 사후지원)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전환 : 월 최대 40만원
·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로 전환 : 월 최대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전환: 월 최대 40만원)

2.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추가지원

3. **대체인력 인건비**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근로시간 단축)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의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을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요건** ① 전환제도 도입, ②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③ 전자·기계적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④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지원내용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4만원** (1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 기업에 한함)

2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시간선택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요건** ① 무기계약 체결, ② 4대 사회보험 가입, ③ 주 15시간~30시간 근로, ④ 최저임금 110%(단,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⑤ 전자·기계적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⑥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 비례 원칙), ⑦ 전일제 근로자 채용 시, 전일제 전환 기회 우선 부여

지원 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구분	1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중소·중견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기업	30만원	360만원

7 일·생활 균형 캠페인

»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와 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핵심 3분야	
 오래 일하지 않기	· 정시퇴근하기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하게 일하기	· 똑똑한 회의·보고 · 명확한 업무지시 · 유연한 근무
 제대로 쉬기	· 연가사용 활성화 · 건전한 회식문화 · 쉴 권리 지켜주기
기본과제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지원 내용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 등재,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외식·여가활동 등 할인혜택 제공

8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제)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의 **사업주**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 내용 1.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당 **간접노무비**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1주당 지급액		연간총액	
구분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 금액	10만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2. **재택·원격 근무**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프라 지원**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

종류	용도	지원내용
시스템 구축비	정보·보안시스템, 클라우드사용료 등	최대 2천만원 직접지원
설비·장비 구축비	원격근무용 설비, 통신장비 등	최대 4천만원 용자지원